

#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0
----------	-----

제출년월일 : 2024. .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건강진단 수수료 징수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상위법 개정으로 식품위생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수수료 3,000원을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에 반영하여 징수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제9조(증명발급 등의 수수료)의 별표 1 중 제증명발급 수수료 기준(제14호 신설)
- 1. ~ 13.(종전과 동일)
  - 14. 건강진단 결과서 1통(3,000원)

##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 「지역보건법」 제25조(수수료 등),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나. 예산 조치 :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4.07.22. ~ 2024.08.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평창군 공고 제 2024-1063호, [의료지원과-5377(2024. 8. 13.)호]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기획예산과-1268(2024. 7. 18.)호]
- 3) 부패영향평가 : 없음[기획예산과-1268(2024. 7. 18.)호]
- 4) 성별영향평가 : 없음[가족복지과-3351(2024. 7. 22.)호]
- 5) 법제심사 : 걱정 [기획예산과-3619(2024. 8. 30.)호]
-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기획예산과-4934(2024. 9. 26.)호]

평창군 조례 제 호

##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건강진단결과서	1통	3,000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	----	--------	---------------

###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제 증명 발급 수수료

(단위:원)

구	분	기	준	수	수	료	비	고
1.	건강진단서	1	통	5,000				
2.	채용신체검사서	1	통	5,000				
3.	일반진단서	1	통	10,000				
4.	상해진단서(3주미만) 상해진단서(3주이상)	1	통	50,000				
		1	통	100,000				
5.	사망진단서	1	통	10,000				
6.	사체검안서	1	통	20,000				
7.	자동차 운전면허 신체검사	1	통	5,000				
8.	총포,도검 등 신체검사	1	통	5,000				
9.	건설기계 면허 신체검사	1	통	5,000				
10.	기타증명서	1	통	2,000			기본 10장 기준, 초과시 장당 200원	
11.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	1	통	1,000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추가발급시 수수료 면제	
12.	1통 초과발급	1	통		주석으로			
13.	수질검사수수료				항목별 검사수수료			
14.	건강진단결과서	1	통	3,000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주) ① 1통 초과 발급시 통당 1,000원 추가

② 부수적인 검진료는 별도

③ 그 밖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 및 규정 등에 정해진 수수료를 준용하고 정해진 수수료가 없는 경우 이 조례 유사 항목을 적용한다.

④ 수질검사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별표 1]

##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1] 제증명발급 수수료	[별표1] 제증명발급 수수료
구 분	구 분
1. 건강진단서	1. 건강진단서
2. 채용신체검사서	2. 채용신체검사서
3. 일반진단서	3. 일반진단서
4. 상해진단서(3주미만) 상해진단서(3주이상)	4. 상해진단서(3주미만) 상해진단서(3주이상)
5. 사망진단서	5. 사망진단서
6. 사체검안서	6. 사체검안서
7. 자동차 운전면허 신체검사	7. 자동차 운전면허 신체검사
8. 총포,도검 등 신체검사	8. 총포,도검 등 신체검사
9. 건설기계 면허 신체검사	9. 건설기계 면허 신체검사
10. 기타증명서	10. 기타증명서
11.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	11.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
12. 1통 초과발급	12. 1통 초과발급
13. 수질검사수수료	13. 수질검사수수료
	14. 건강진단 결과서

  

기준	수수료	비 고
1통	5,000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검사료 +수수료 징수
1통	5,000	
1통	10,000	
1통	50,000	
1통	100,000	
1통	10,000	
1통	20,000	
1통	5,000	
1통	5,000	
1통	5,000	
1통	2,000	기본10장기준, 초과시 장당 200원
1통	1,000	인터넷또는 모바일로 추가 발급시수수료 면제
1통	주석으로	
	항목별 검사수수료	
	1통	3,000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주)① 1통 초과 발급시 통당 1,000원 추가

② 부수적인 검진료는 별도

③ 그 밖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 및 규정 등에 정해진 수수료를 준용하고 정해진 수수료가 없는 경우 이 조례 유사 항목을 적용한다.

④ 수질검사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주)① 1통 초과 발급시 통당 1,000원 추가

② 부수적인 검진료는 별도

③ 그 밖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 및 규정 등에 정해진 수수료를 준용하고 정해진 수수료가 없는 경우 이 조례 유사 항목을 적용한다.

④ 수질검사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 관계법령 발취

## 지역보건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65호, 2023. 6. 13., 일부개정]

- 제25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시행 2024. 1. 8.] [총리령 제1919호, 2023. 12.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 ①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강진단(이하 “건강진단”이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7.>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폐결핵

② 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매 1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7.>

③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3. 12. 7.>

④ 건강진단은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건강진단 대상자가 건강진단 실시기간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7.>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하여 제3조에 따른 실시 기관에서 정상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건강진단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8., 2023. 12. 7.>

⑥ 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유예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2022. 4. 28., 2023. 12. 7.>

**제3조(건강진단 실시)** ①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해당 영업소에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3. 12. 7.>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별지 서식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3. 12. 7.>

**제4조(감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의료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천원을 내야 한다. <개정 2018. 3. 28.>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 3. 28., 2023. 11. 22.>

[시행일: 2024. 11. 23.] 제5조

**부칙** <제1919호, 2023. 12.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

##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장 허 현
연락처	(033) 330 - 4860